

과학기술 진흥시책에 관한 설문 답신

1. 70년대의 과학기술 개발 방향

- 가) 국내 각계 과학기술자를 망라한 “과학기술회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결기 관으로 창설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개발 정책을 심의함과 아울러 개발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도 담당케 할것.
- 나) 과학기술 진흥법을 보충 강화하여 과학기술진흥을 적극 추진할것.
- 다) 선진 제국의 산업개발과 공해발생의 상호 관계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문제로 되는 공해문제를 사전에 해결 할수 있도록 특별 조치방안을 확립 할것.
- 라) 세계각국의 산업 경제구조가 분업화 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학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입지조건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특유의 산업으로 발전 할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 검토하고 이를 개발하여 상품화 하도록 할것.
- 마) 해양과학. 우주과학. 생명과학. 인간공학 등도 연구 개발하도록 하기위하여
 해양과학연구소. 우주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공해문제연구소.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또한 대학에 인간공학 강좌를 설정 할것.
- 바) 국내 자원개발과 아울러 대륙붕 자원개발에 주력하여 해저 석유를 비롯한 해저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할것.
- 사) 생활의 과학화에 관한 범국민적 계몽선전 운동을 강력히 전개 할것.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취약점 및 연구활동 강화방안

- 가) 자연구기관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정신적·물질적·사회적 제여건이 안정되어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할것.
- 나) 연구시설을 증강하고 연구비를 대폭 증액

토록 할것.

- 다) 관·민연구기관(시험소, 검사소포함)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실정과 애로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재료로 할것.

3. 대학연구활동 육성방안

- 가) 국·공립대학에 연구비의 증액과 아울러 연구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대학허가 시설기준에 미달된 대학에는 강력히 보완되도록 강구할것.
- 나) 각 대학간의 유대를 긴밀히하여 상호 연구활동에 협조가 되도록 강구할것.
- 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상당한 보상제도를 실시 할것.

4. 민간기업의 연구활동 촉진방안

- 가) 연구활동 투자에 대한 면세 조치를 광범화 함과 동시에 그 수속절차를 간소화 할것.
- 나) 기업체에 실험실. 연구실을 갖도록 권장 또는 제도화 할것.

5. 산·학·인의 협동체제수립 방안

- 가) 산·학협의회를 두어 공산품의 기술 개발 추진과 기업운영에 적극지원 협력토록 할것
- 나) 국영·및 정부지원 기업체를 비롯한 각 기업체에 최고 경영직에 과학기술자를 등용하여 과학기술자의 의견을 채택함으로, 산·학·인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서 기업발전에 기여토록 할것.

6. 전략산업의 건설을 위한 기술 개발방안

- 가) 전략산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활용할것.
- 나) 기술도입 내지 기술 협력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국내 기술자. 기능자를 훈련하여 양질의 기술향상을 도모할것.

7. 수출확대 지원을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기술 개발과제

- 가) 수출산업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는 과학자. 기술자도 위원으로 참여케 함과 동시에 수출

공산품의 품질 규격을 엄격히 하고 품질 시험·검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양질의 상품을 엄선할 것.

나) 과학기술자를 각전문분야별로 다수 해외에 파견하여 기술정보를 얻어 수출품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강구할 것.

8. 효율적인 외국기술도입 촉진 및 도입기술의 흡수촉진방안

가) 외자도입 협의위원회에서 외자도입 안전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술검토는 과학기술처에서 사전 검토 조치케 할 것.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강력하고 권위 있는 기술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 기술검토는 이를 폐지 할 것.

나) 선진제국의 공업소유권중 국제적으로 우수한 것을 조사검토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극 도입케 할 것.

다) 도입기술의 흡수촉진을 위하여 전(가) 항에 기술검토 위원회로 하여금 그 방안을 수립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도입 기술의 실지 이용실태에 관하여 등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할 것.

라) 기술공의 훈련에는 개개인의 적성을 검토하여 적자를 선정 실시 할 것.

9.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바라는 사항.

가) 과학기술처 소관 용역연구 개발비를 비롯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의 대폭증액을 위하여 과감한 계산투자를 전개할 것.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과학기술 개발비 예산을 GNP의 2% 이상으로 확보하여 과학기술 개발이 국가산업·경제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토록 할 것.

나)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업선과 아울러 연구비의 낭비 내지 황유화 현상을 방지 할 것.

다) 과학기술 공무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술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

라) 과학기술학회 및 단체육성에 더욱 주력해 줄 것.

마) 과학기술센터(회관) 건립에 정부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

바) 기술용역에 대한 과세를 감면하여 줄 것.

사) 과학기술 진흥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도록 할 것.

아) 전국의 국·공립 및 민간연구 기관의 실태 조사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주실 것.

자) 특허국과 표준국을 과학기술처에 이관하여 주실 것.